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담당 김지애(6578)/ E-mail: jiaek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1-3283호

시행일자 2017. 7. 1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학회장,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검체검사 질가산율 적용관련 추가안내**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92호(2017.05.31.)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11호(2017.06.30.)

2. 상기 고시로 안내된 '검체검사 질 가산율'과 관련하여 청구시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 확인

-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(공인인증서 로그인) → 현황신고·변경 → 식대·차등제 → 특수운영현황 →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
-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은 수탁기관에 문의하여 질가산율 등급을 확인
- 검사실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의 질가산율 등급을 확인

※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2017.12.31.까지 별다른 평가과정 없이 기본적인 가산(2%이상, 핵의학적 방법 등 일부행위 제외)이 적용됨

※ 2018년 이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한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과 관련한 '전문인력' 교육은 추후 우리협회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임

나.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에 따른 산정코드 기입

-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등급에 따라 각각 1, 2, 3, 4(또는 A1, B2, C3 ,D4), 7, 8으로 기재하여 청구

※ 청구 프로그램별로 청구 형태에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 별로 청구방법을 확인하여야 함.

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직인생략